

#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인수의원의외8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5일
-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며 도민의 건강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(안 제2조)
-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근거 마련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안을 검토한 바
-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
-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